

부산직할시사하구조례제 호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불균일과세)중 “임대주택에 대하여는”을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라 하고 동조단서중 “경감한 재산세”를 “경감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한다.

부칙 (조례 54호 1988. 5. 1.)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 3 조(불균일과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 대한 <u>종합토지세</u>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u>경감한 재산세</u>를 추징한다.</p>	<p>제 3 조(불균일과세) <u>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u> ----- ----- -----<u>종합토지</u> <u>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의 규정에</u> <u>불구하고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다.</u>---- ----- -----<u>경감한 재산세와 종합</u> <u>토지세</u>-----</p>